



가

[2018. 12. 13.] [15177 , 2017. 12. 12.,]

(가) 044 - 203 - 5237

() 044 - 203 - 5274

28 3(

)

가

. . .

가

가

7

.

. , 가

가

1

가

가

가

가

가

[2014. 12. 30.]

< 15865 ,2018. 12. 11.>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

[시행 2019. 10. 8.] [대통령령 제30106호, 2019. 10. 8., 타법개정] [전체조문보기](#)

제14조의2(공사계획의 통보가 필요 없는 건축물 공사) [법 제28조의3제1항](#)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.

1.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 사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
2. 건축물 일부[벽, 기둥, 바닥, 보 또는 지붕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)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증축·대수선 공사
3. 건축물 일부의 철거 작업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대수선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사
 - 가. 철거 부분에 도시가스배관이 없거나 도시가스공급이 없을 것
 - 나. 주변 가스배관시설의 손상 우려가 없을 것

[본조신설 2015. 6. 30.]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
[시행 2018. 12. 13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0호, 2018. 12. 13., 일부개정] [전체조문보기](#)

제48조의2(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) 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증축·개축·대수선·철거하는 공사의 시행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[법 제28조의3제1항](#)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계획을 알려주어야 한다.

1. 건축물 공사 발주자의 인적사항
2.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
3. 건축물 공사의 종류·내용·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에 관한 사항
4.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

② [법 제28조의3제2항](#)에서 "가스차단밸브 잠금조치, 배관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"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안전조치에 관한 협의
 - 가.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의 손상과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의 공사 현장 입회 여부를 포함한 [별지 제34호서식](#)에 따른 안전조치 협의서(이하 "안전조치 협의서"라 한다)를 작성할 것
 - 나. 안전조치 협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건축물 공사 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각 1부씩 보유할 것
2. 건축물 공사 시행자의 안전조치
 - 가.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대로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
 - 나. 안전조치 협의서에 따른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
3.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조치
 - 가.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(차단)조치 또는 막음조치를 할 것
 - 나. 건축물 부지 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조치를 할 것
 - 다. 안전조치 협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

[본조신설 2015. 7. 1.]